

제 호

##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:

4. 업무범위: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